

● 第18回 全國圖書館大會

全國圖書館大會 綜合討論要約

1. 公共圖書館 司書職의 人事制度問題

가) 무엇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基盤은 國家政策의 次元에서 造成되지 않으면 안 된다. 施設 裝備에서 資料의 確保 등 物的 要素는 財政確保라는 政策의 配慮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司書 또는 圖書館要員의 確保는 制度面에 대한 政策次元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은 財政確保面에서 政策의 配慮가 없을 뿐만 아니라, 實際로 實現可能한 制度的 側面에서도 政策의 配慮가 너무 看過되고 있다. 이 點에서 發表者가 提起한 司書職級의 上向閉鎖性의 問題는 當事者나 關係部處에서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나) 公共圖書館의 上位職이 過去 十年間이나 司書職의 進出이 不可能하였던 主要原因은 公務員 任用令上의 모순점에 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욱 重要한 原因은 이러한 모순점을 除去하기 위한 끊임없는 努力이 이룩되지 않은 데에 있다. 圖書館協會는 이러한 努力을 集約적으로 展開할 수 있는 가장 最適의 位置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司書職의 專門性을 수호하는 基本과제라 할 任用令의 改正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전체 圖書館人의 自覺을 上向시키고 이를 통하여 圖書館發展의 原動力을 形成하기 위하여 人力開發委員會와 같은 항구적 조직을 圖協 內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다) 司書職級의 上向調整案은 公共圖書館의 公權의 位置를 強化하여 行政職群 內에 占有하는 案이 보다 現實的이다. 研究職種으로 變換하는 案은 公共圖書館運營의 行政의 縱橫

關係를 감안할 때 약간의 問題가 提起되며, 특히 改正節次의 屢次를 理由로 묵과되지 쉬운 難點이 있다. 따라서 發表者의 第3案인 行政職群에 占有하되 上向調整하는 方法을 택하여야 한다.

라) 上向調整案과 並行하여 公共圖書館의 職制改正案도 더불어 研究되어야 한다. 現在 公共圖書館의 職制는 그 規模에 따라 各各 相異하지만, 우선 上向職級이 적용가능한 大規模 圖書館부터 標準의인 職制改編案이 제시되고, 또한 뒤이어 中小規模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標準의인 組織改編案도 제시되어야 한다.

마) 公共圖書館의 司書는 大都市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臨時職定員으로 充당되고 있다. 地方行政의 實情으로 보아 司書職을 確保할 수 없는 까닭에 우선 임시적으로나마 圖書館 運營의 公백을 메우고자 司書를 起用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司書의 實質의인 存在價値를 감안할 때 이러한 處事는 圖書館의 合目的性과 相馳된다. 職級의 問題는 司書職의 定員에서부터 下位級이 問題에까지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發表者의 論理는 이런데에서 補充되어야 할 것이다.

바) 公共圖書館員의 全部가 國家公務員인 만큼 自身의 職級에 대한 改善案을 스스로 提起하는 것은 어느 意味로 보던 合理的인 處事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 當事者가 아닌 第三者의 建議나 改善案 推進이 강력히 요망된다. 이 點에서 發表者의 意見중 學界의 要望事項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2. 大學圖書館司書의 人事制度問題

가) 大學圖書館의 職制 및 職級에 關하여 主題發表 內容에 提示된 諸般內容을 全幅의 으로 贊同한다.

나) 司書의 資格基準을 上向調整하여 正司書(一級)에 博士學位를 所持하는 者, 正司書(二級)에는 碩士學位 所持 者로 하는 등 最高의 學歷을 要求하는 것을 볼 때 大學의 司書는 當然히 教授職으로 任用하여야 하겠으나 한편으로 文獻研究職으로서 任用하여도 教育機關에서 奉仕하면 教授職과 對等한 待遇가 隨伴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大學의 司書職은 教育專門職으로서의 文獻研究職이 바람직하다.

다) 文獻研究職의 資格規程에 있어서 教育公務員法 第6條(教育專門職의 資格)[별표]에 新設할 基準은 別途로 委員會를 構成하여 이를 設定하도록 한다.

라) 公共圖書館 司書職制의 改善方案이 一般職으로서 2級甲類까지의 上位職級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大學圖書館의 改善方案과의 相馳되는 意見은 이를 相互 調整하도록 한다.

마) 위의 2와 3항의 問題를 協議하는 方案을 이를 圖書館協會에 일임하기로 한다.

3. 司書의 資格基準에 관한 再檢討

가) 正司書 2級의 資格基準에 있어서 同等 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 敎科科目을 30學

點 이상 履修한 者로 되어 있고, 또 準司書 資格基準에서도 30學點 이상 履修한 者로 되어 있는데, 實驗大學制度 實施學點의 配點이 실제로 30學點을 履修할 수 있도록 制度化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대하여 30學點에서 20學點으로 修正함이 妥當하다는 意見이 提示되어 이를 대체적으로 받아들인다.

나) 司書의 資格基準上 外國에서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歸國한 사람에게도 이 制度를 認定할 것인가에 대하여 :

外國에서 大學 또는 大學院課程의 圖書館學을 전공하고 귀국한 사람도 圖書館法施行令의 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第4條 2項 1號에 의거)하여 資格證을 交付申請하면 資格證을 發給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意見으로 綜合하다.

다) 准司書에서 2級正司書로의 길을 막아 놓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意見에 대하여 :

准司書가 2級正司書가 되기 위해서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圖書館學科에 편입하여 그 資格을 取得케 함으로써 專門職司書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法이인데, 예를 들어 의료보조원이 오래 동안 실무경험을 얻었다고 하여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事例와 같은 것인데, 이 制度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사서는 구제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發表者의 설명이 있었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도서관의 평생 교육

전통 찾는 문화 국민